

문서 번호	공원녹지과-4549
결재일자	2015.3.1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도시농업담당	공원녹지과장	안전건설교통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지애	이동환	장용수	곽병한	김병환	03/10 김영배
협 조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정무보좌관 윤정배 기획예산과장 代김석우 규제개혁담당 김용환 주무관 김하연</p>				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

2015. 3.

**안전건설교통국
공 원 녹 지 과**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일부개정 조례안 확정

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1. 4. 4. 제정된 「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‘도시농업위원회’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**입법예고** 및 **부패·인권·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**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

I 추진 개요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(공원녹지과 - 2233호, 2015.02.05. 구청장 방침)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 - 입법예고 기간 : 2015. 2. 12. ~ 3. 4.(20일간)
 -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 - 의견제출 사항 : 의견제출 없음
-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영향평가 의뢰
 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 (2015.02.13.)
 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개선 권고 (2015.02.17.)
 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개선 권고 (2015.03.05.)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법제심사 의뢰
 - 법제심사결과 통보(2015.03.06.) : 안 제7조 제③항 일부수정

II

개정 사유

- 도시농업 전문가와 역량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·활동을 통한 도시농업 시책 운영 활성화
- 민·관 수평적 파트너십 및 생태적 마을 민주주의 실현

III

주요 개정 내용

-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농업위원회 설치(안 제4조)
-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5조 ~ 제9조)
 - 제5조(위원회 구성)
 - 제①항 위원은 7명이상 11명 이내(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)
 - 제②항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
 - 제③항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
 - 제1호 성북구의회의 의원 1명
 - 제2호 도시농업 업무 소관 국장
 - 제3호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제4호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
 - 제5호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
 - 제④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
 - 제⑤항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소관 부서장
 - 제6조(위원장의 직무)
 - 제7조(회의)
 - 제8조(위원의 해촉)
 - 제9조(수당)

IV 영향평가 결과 반영

■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(개선권고)

- 개정안 제5조(위원회 구성)에서 위원회 위촉 시 ‘청렴서약서 징구 규정 미존재로 조항 추가 또는 청렴서약 확인’ 내용 마련 필요 ⇒ **미반영**
- 개정안 제7조(회의)에서 ‘회의록 작성·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삽입하여 구체적인 기준안’ 마련 필요 ⇒ **반영**

당초 개정(안)	수정(안)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<u>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은 「성북구 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」을 준용한다.</u>

■ 인권영향평가 결과 반영(개선권고)

- 개정안 제5조(위원회 구성) 제①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균형적인 양성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성별 구성에 관한 조항 수정 필요 ⇒ **반영**

당초 개정(안)	수정(안)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	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<u>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.</u>

■ 성별영향평가 결과(원안 동의)

V

법제심사 결과 반영

법제심사 결과 반영(일부 수정)

당초 개정(안)	수정(안)
제7조(회의) ③ 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은 「성북 구 위원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 침」을 준용한다.	제7조(회의) ③ 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은 「 <u>성북 구 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위원회 설 치 및 운영 지침</u> 」을 준용한다.

VI

향후 추진 일정

-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: 2015. 3. 10.
- 구의회 부의안건 제출 : 2015. 3. 10.
- 제233회 임시회 심의·의결 : 2015. 3. 23. ~ 3. 31.
- 조례 공포 및 구보 게재 : 2015. 4.

- 붙임 1. 제안이유서 1부
2. 일부개정조례(안) 1부
3. 신구조문 대비표 1부